



# 성동구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한 후,

2.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업종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7952	업소명	이모네곱창
영업자	박경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00,(성수동2가)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의견제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니 서처를 바라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원합니다.				
처분내용	과징금 3,600,000원 부과(영업정지 1개월에 같음)				

나. 과징금 산정내역

- 연간매출액: 42,050,000원(2013년도 매출액)
- 1일 과징금액: 120,000원(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총 과징금액: 120,000원/일 × 30일 = **3,600,000원**

- 붙임 1. 행정처분명령서 1부.  
2. 과징금 납입 고지서 1부(별도 첨부). 끝.

주무관

**최병희**

식품위생팀장

**정창훈**

보건위생과장

**정주섭**

보건소장

12/15  
**김경희**

협조자

시행 보건위생과-21382 ( ) 접수 ( )

우 133-88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 <http://bogunso.sd.go.kr>

전화 02-2286-7154 /전송 02-2286-7124 /

/ 부분공개